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내실 있는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205호, '21.4.20. 공포 및 '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수행기관 명시(안 제3조)

- 1)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명시

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 1)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기술사, 교수, 박사 등 직업군과 실무 경력(‘박사: 2년’, ‘석사: 5년’ 등)으로 명확화

다. 통합적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방안 등 마련(안 제23조)

- 1) 관계기관 합동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예·경보 자료의 검토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폭염·한파대책 수립 시 포함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1) 지역별 폭염·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수교육 기준 개선(안 제58조, 별표3의3)

1) 방재대행자를 기술인력으로 우선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이수일로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마련

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의 위탁(안 제73조)

1)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로 추가

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2)

1) 부지면적이 $2,000\text{m}^2$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일 경우
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토록 명시

아. 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72조의2)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8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을 “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자원·토질 및

기초·토목시공·산림·도로 및 교통·도시계획·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제16조의2제1항제14호 중 “이상”을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3조의2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는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매월 발령하며, 기상 상황과 전망, 농업용수와 생활 및 공업용수 현황과 향후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 발령에 필요한 분야별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뭄 예보 및 경보 자료를 검토·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예보 및 경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을 “(폭염피해 저감시설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폭염 취약계층 및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폭염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4. 폭염 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의3의 제목 “(한파피해 저감시설 등)”을 “(한파피해 저감시설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2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한파 취약계층 및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한파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4. 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8조제4항 중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기술인력에 대하여”로, “한다”를 “하며, 그 시기는 별표 3의3과 같다”로 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안전도”를 각각 “자연재해 안전도”로 한다.

제73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제3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시기

(제58조제4항 관련)

구분	시기
최초 보수교육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외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생략) ② <u>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u>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u> 1. <u>국립재난안전연구원</u> 2. <u>법 제4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u> ③ <u>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u> ----- ----- -----.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u>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4조제8항-----</u> ----- ----- <u>위원장 및</u> ----- -----

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
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된다.

-----.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자원 ·
토질 및 기초 · 토목시공 · 산
림 · 도로 및 교통 · 도시계획
· 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
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방
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

③ ~ ⑧ (생 략)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	<u>인 사람</u> <u>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u> <u>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u> <u>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u> <u>마.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 ----- ----- ----- -----
---	--

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략)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 28. (생략)

② ~ ④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op, middle, and bottom) spaced evenly down the page. The lines are light gray and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 13. (현행과 같음)

14. -----

----- 이상이고 공장건축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

1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가목 방제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
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 합동 가목 예보 및 경보는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

제23조 (생 략)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기경보 수준에 따라 매월 발령하
며, 기상 상황과 전망, 농업용수
와 생활 및 공업용수 현황과 향
후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
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 발령에 필요한 분야별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 가뭄 예보 및 경보 자료를 검
토·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예보 및 경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제23조의2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
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폭염 취약계층 및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폭염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4. 폭염 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
 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
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補修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 한 사항
2. 한파 취약계층 및 농 · 어업
인, 옥외 작업자의 보호에 관
한 사항
3. 농어업 · 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한파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4. 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지정
·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
항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파 피해 예방을 위
해 필요한 사항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술인력에 대하여 -----

 ----- 하며,
그 시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
역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
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따
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 자연
재해 안전도 -----
-----.

② -----
----- 자연재해 안전도 --

-----.

③ -----
--- 자연재해 안전도 -----

---.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대행자
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5118